

## 충청북도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지역내 공해피해주민의 이주대책추진과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면제)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지역내 공해피해 주민의 이주대책으로 이주하는 이주자가 지급받는 보상금으로 충청북도 관내에서 대체 취득하는 주택지, 농경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이주자가 보상금을 받은 날(최종 수령일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지, 농경지 및 주택을 취득 또는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등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관할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면제신청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에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3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